

2018 자체 행정 종합감사 결과

1. 감사 개요

- 감사기간 : 2018. 11. 12. ~ 11. 16. [5일간]
- 감사대상 : 사무국 총무과 재무팀, 정보전산원
- 감사인원 : 7명

2. 감사결과 처분내역

지적건명	지적내용	처분(안)
1. 대학명의 계좌 예산 미편입 등 관리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◦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13조에 의거 국립대학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편입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하나, 금오공과대학교 ○○○에서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3개 계좌 합계 24,740원을 휴면계좌로 방치하고, 임의단체 명의로 개설되어야 할 7개 계좌 840,103,706원을 대학명의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음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◦ 시정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거래실적이 없는 3개 휴면계좌는 해지하고, 잔액 24,740원은 관련 회계로 세입조치 하기 바라며,- □□□ 등 임의 단체가 대학 명의로 개설한 계좌는 해지하기 바람.
2. 수입금 관리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◦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(징수 결정), 제5조(수납후 징수결정) 등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, 그 밖의 관계 규정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나, ○○○에서는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총 3건을 부적정하게 수입결의를 지연한 사실이 있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◦ 시정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람.

지적건명	지적내용	처분(안)
3.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투입인력 관리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6년 『유지보수(정보시스템) 용역 계약의 회』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“계약대상자의 투 입인력 임의교체를 금지하며,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인력 변경 시 최소한 15일 이전에 대체 인력의 인적사항과 변경사유를 우리대학교에 사전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.”으로 명시 되어 있으나, - ○○○○○은 2016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 역 사업을 수행하면서, 금오공대 홈페이지 외 2종 시스템의 투입인력이 6회 교체가 있었으나, 투입인력 교체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, 투입 인력에 대한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자격 기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있음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련업체 경고 ○ 시정 - 추후 유사한 사업 수행시에는 제안 요청서에 의거 집 행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람.
4. 유지보수 용역 하도급 승인 관리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오공과대학교 ○○○○○에서는 용역 계약 원사업자의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이 있을 경 우 「소프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 침」에 따라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 를 결정하여야 함에도, - ‘2016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’ 및 ‘2016년 전산망 및 PC콜센터 유지보수 용역 계약’의 시행 시 원사업자((주)△△△△△, ☆☆ ☆☆)의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,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검토 후 승인여 부를 결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월 용역완료 검사조서에 따르면 불임과 같이 하도급거래 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음. ○ 또한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3 조에 따라 원사업자가 기성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업체가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, - 금오공과대학교 ○○○○○에서는 ‘2017년 정 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’ 및 ‘2017년 전산망 및 PC콜센터 유지보수 용역’을 시행하면서 하 도급 승인 사실을 재무팀에 통보하지 않아, 원 사업자인 (주)△△△△△, ☆☆☆☆에서 하도급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련업체 경고 ○ 시정 - 유지보수 용역 시 에는 관련 규정 에 따라 시행되 도록 시정조치 하 시기 바람

지적건명	지적내용	처분(안)
	<p>체에게 붙임 내역과 같이 길게는 4개월 21일 이후, 짧게는 16일 이후에 기성금을 지급하는 등 총 95건을 지연지급하였음에도 하도급거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이 있음.</p>	
5. 용역계약 수행 관리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상법」 제411조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16년 및 2017년 금오공과대학교 ○○○○◎의 ‘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’ 수행업체인 주식회사 △△△△에서는 매년도 사업수행 계획서에 주식회사 △△△△의 ‘감사’로 재직 중인 ○○○를 ‘이사’로, 2016년도 정량적평가 제안서에 포함된 재직증명서에는 ‘이사’로, 2017년도 정량적평가제안서에 포함된 재직증명서에는 ‘본부장/이사’로 기재하여 제출하여 관련 사업 관리감독에 차질을 주었고, - 매월 청구서에 첨부된 사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계약기간 동안 상기인(○○○)이 시스템 정기점검 등의 직무를 직접 수행하여 「상법」 제411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련업체 경고 ○ 시정 - 관련부서는 유사사업 시행 시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실시도록 시정 조치 - 상법 위반 여부는 추가 검토 후 필요시 조치

3. 우수사례

○ 대학회계 예산 절감

- 총무과 재무팀에서는 2017년~2018년 프로젝터램프·토너 등 전산소모품과 일반폐기물(생활쓰레기)처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,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2017년은 견적금액 대비 16.7%(42,000천원), 2018년은 견적금액 대비 14.1%(32,364천원, 예정액) 등 계약방법을 개선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함.
- 연간 단가 계약 현황

(단위 : 천원 / %)

연도	계약명	견적가	계약금액	절감액	절감율
2017	프로젝터램프·토너등전산소모품	185,000	151,000	34,000	18.4%
	일반폐기물(생활쓰레기) 처리	66,000	58,000	8,000	12.1%
	소계	251,000	209,000	42,000	16.7%
2018 (예정)	프로젝터램프·토너등전산소모품	157,232	133,646	23,586	15.0%
	일반폐기물(생활쓰레기) 처리	72,900	64,122	8,778	12.0%
	소계	230,132	197,768	32,364	14.1%